

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10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」는 서울시 식생활 교육 정책 개발과 사업 확산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 문화를 만들어 가는 식생활 교육 전문 기관으로
- 나. '20년 1월 공모를 통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, '23년 1월 재계약으로 운영하여 '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
- 다.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식생활 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,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5조의2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)
- 「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」 제11조(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또는 설치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제①항2호(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), 3호(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)

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시민의 가구 및 인구유형 변화(1인가구 및 65세 이상 인구 증가)에 따른 식생활 다변화로, 식생활 관련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단시간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식생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함에 따라,
- 서울시민의 다양한 식생활·식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내 영양·식생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식품·영양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 위탁을 통해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 활성화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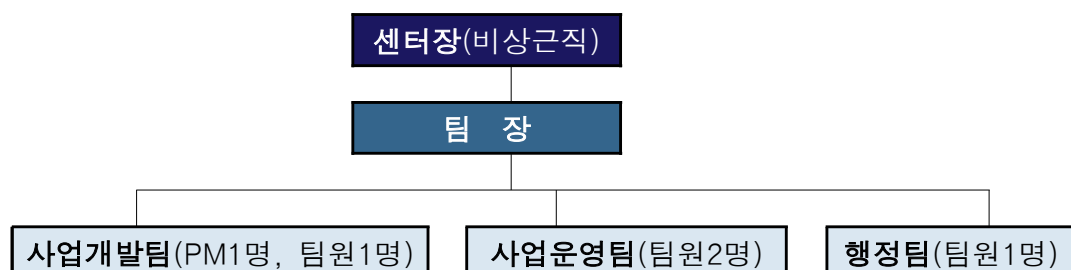
다. 위탁사무 내용

- 서울시 식생활 현황 분석 및 취약분야 사업 개발
-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·홍보 강화
- 자치구 식생활 개선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
-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 교육사업 수행
- 서울시민 맞춤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환경친화적 식생활 교육 정책 사업
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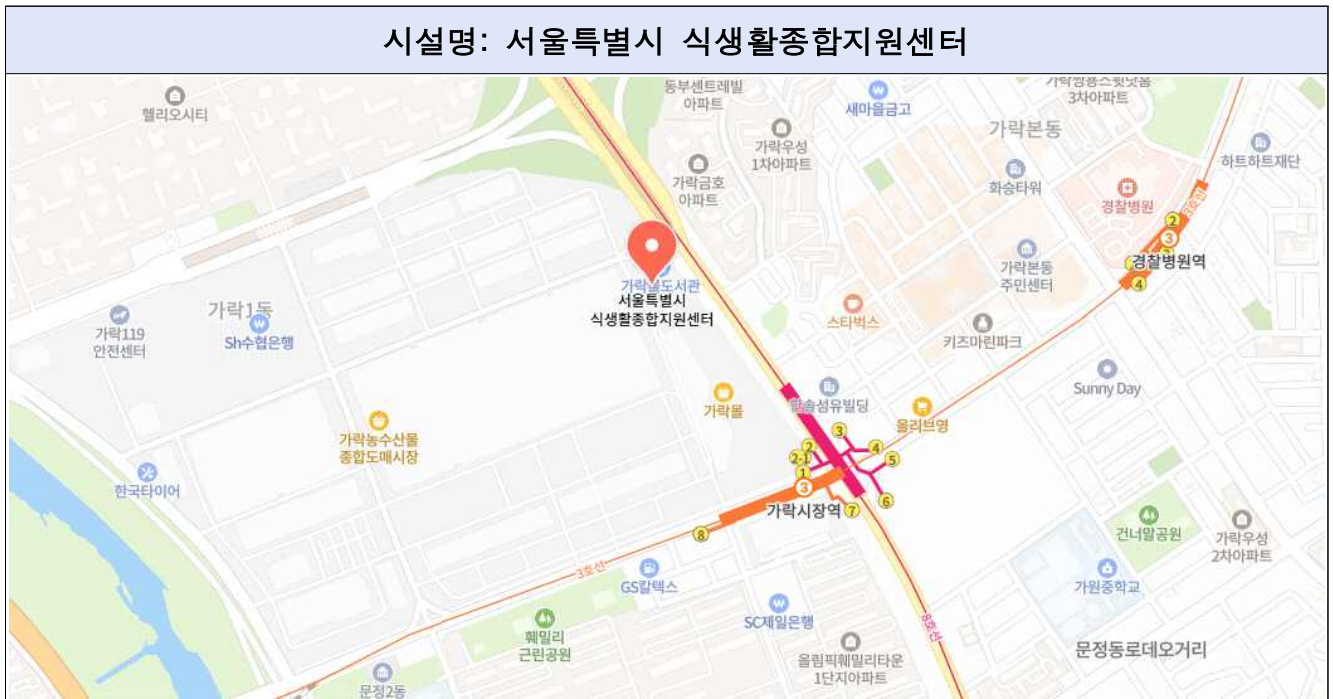
라. 민간위탁기간 : 2026.1.1.~2028.12.31.(3년)

마. 위탁시설 개요

- 시 설 명 :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
- 조직도 및 정·현원 : 정·현원 7명(센터장, 팀장 1명, 팀원 5명)



- 소재지 :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
- 시설규모 : 사무공간 총 125.09 m^2
 - 가락물 업무동 13층 15호 41.22 m^2 , 16호 83.87 m^2
- 주요시설 : 개인상담실, 사무실, 회의실 등
- 위치도



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제25조의2 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)의 자격을 구비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관련 분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공모·선정

사. 소요예산 : 710백만원

- 민간위탁금 : 710백만원(국비 50% 145, 시비 50% 145, 자체시비 420)
 - ※ '26년 국비 보조금액 등에 따라 예산 금액 변경될 수 있음
- 산출근거 : 인건비353,487천원, 운영비 52,290천원, 사업비 등 300,223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식생활교육지원법

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)

-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식생활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일 것
 2. 제3항에 따른 지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, 시설·설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
-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이 조에서 “지정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한다.
 1.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2.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
 3.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
 4.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
 5.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
 6.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
 7.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

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제11조(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또는 설치)

- 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으며,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③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 1.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2. 식생활 교육 관련 주체 간의 연계망 구축 지원
 3.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지원
 4. 식생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
 5.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
 6. 다른 시·도 및 국가의 식생활교육 추진활동과의 협력 및 정보제공
 7.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
 8.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6년 예산 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

- 2025.6.25.: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(재위탁)
- 2025.7.11.: 민간위탁종합성과평가 실시(85.26점)
- 2025.7.14.: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(적정, 2025. 제5차)

○ 향후계획

- 2025.9.: 시의회 동의
- 2025.10.~12.: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추진

※ 작성자 :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이은형 (☎ 2133-4739)